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20(목) 10:00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교통건설국 치수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59호
- 나. 제 출 자 : 엄셋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보전과 편의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6조 ~ 안 제7조)
- 라.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안 제8조)
- 마.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안 제9조)
- 바. 하천보전활동 협력 및 지원(안 제10조 ~ 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하천법」 제2조, 제10조, 제46조
- 나. 입법예고 : 2024. 5. 29. ~ 2024. 6. 5.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쾌적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정의규정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하천공간을 제방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하여 규정함.

2)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양천으로 명시함

3)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안 제8조)

○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체육, 학습, 편의 조경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함

4)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안 제9조)

○ 하천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금천구 관내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전과 이용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공생하는 하천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하천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

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